

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0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상정된 안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 2

(14시37분 개의)

○ 소위원장 박범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새로 소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미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고 했는데요, 소위원회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여야 위원님들의 상호 협조하에 원만하게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도 새로 보임되셨는데요, 한 말씀 하실래요?

○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다가 한 3일 전에 법사위로 사·보임돼서 왔습니다. 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배정돼서, 제가 또 과거에 판사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좀 익숙한 업무에 배치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내란 행위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생을 위한 법안을 위해서 충실히 심사에 임하겠고 또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소위원회를 운영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통상 소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공개를 이쯤에서 마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첫 항으로 심사할 사안이 내란 특검법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제가 상황이 허락하는 한까지 언론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여야 위원님들이 언론 공개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장애 내지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느끼시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전체의 총의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14시39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범계** 예.

○**유상범 위원** 언론 공개와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다지만 사실 저희와 협의된 게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소위라는 것은 이 안에서 심도 있게 서로 간에 충실한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률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결국 속기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소위에서 언론에 공개해서 이렇게 진행한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언론 공개는 마무리하시고 논의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이 공개가 안 돼서 국민들이 이 안에서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른다면, 그러나 그것을 꼭 알려야 되겠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이면 소위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들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전례에도 없었던 언론 공개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하시고 우리가 소위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 속기록으로 공개가 되는데 굳이 또 언론을 물리자 하시니, 여당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관례에 없다는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지금 백브리핑을 언론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속기록도 다 나오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런 관례가 과연 적합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한두 번 심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고 오전에 우리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여야 위원님 모두가 다 한 말씀씩 할 정도로 법안 자체는 대단히 공개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상범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하니까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서영교 위원** 필요하시다면 간사와, 소위의 간사도 있으시잖아요. 협의해서 언제든 사전에 열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전에 언론에게 열기도 했고 또 안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저는 공개하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오전에 전체회의도 했고 그러니까 모두 정도만 조금 하시고 그리고 비공개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사실은 조금 전까지도 공개를 제한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한 대로 공개를 제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언론 공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제정안은 안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출입통제 및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는 수사대상의 불특정·광범위성을 지적하면서 직접적으로 7·8·10호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른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 중 주요 내용으로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대법원장은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되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간주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 즉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8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임명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합니다. 특별수사관은 6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수사협조요청권·인력지원요청권을 보유하는데 구체적으로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60인 이내의 인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8조에는 비밀 누설 금지, 수사내용 공표 금지, 영리·겸직 금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70일, 연장 30일 그리고 대통령 승인을 전제로 재연장 30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준비기간 중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는 점입니다.

재판기간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 제9조제2항에는 특별검사가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기간을 정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요구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9조제6항에서는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사건 처리 보고, 안 제12조는 대국민 보고에 대해 규정하는데 특히 안 제12조에서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특별검사가 사망·사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3조의 임명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를 다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판관할, 이의신청, 별칙 및 부칙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정보원 및 군으로 하여금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군사기밀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압수수색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우려가 있고 안보와 관련된 다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래 네모 박스를 보시면, 법원행정처 수정의견으로 안 19조 제1항, 현행 제정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1항에 그대로 유지하고 2항과 3항을 보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 수사내용 공표, 지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기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검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고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임명 절차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 제정안에 의하면 대법원이 관여를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식은 예전에 유전개발 특검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애초에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안이었다가 당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특검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상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는 특별한 이견은 대부분 없고, 다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사대상과 관련돼서입니다.

제2조 8호 부분입니다. 오전 전체회의 때도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2조 8호 부분은 약간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종전 특별검사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이 제목이었는데 현행 제정법은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조 8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1호부터 7호까지, 9호부터 11호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지는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8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기 구분도 없어서, 만약에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인데 그러면 15년 동안 이루어졌던 해외분쟁지역 파병이라든지 대북확성기 가동 등등에 대해서 모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위까지도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8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것은 북한을 도발해서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른바 내란 예비·음모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이 부분도 1호부터 7호까지 이루어진 내란과 관련된 예비·음모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십시오.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19조 특례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번 특검 법률안 논의에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21페이지 박스 안에 저희 수정의견이 개진돼 있습니다. 3항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반영하기는 저희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3항은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항과 같은 주의의무 규정을 넣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두 분, 기관의 직무대행님이나 차장님이나 하도 말씀들이 빠르셔 가지고 정리하느라고 따라가지를 못 하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앞으로 천천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천천히…… 뭐 그렇게 급해요.

다 말씀하셨고요. 요지인즉슨 2조 8호 외환과 관련된 수사대상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인 것 같고, 19조의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 순서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까요, 소위원회 다들 아실 텐데 손을 들어서 의견 표명을 자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일단 수사대상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특검법에 보면 어쨌든 수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립적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좀,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에 있어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특히 2호 같은 경우에는 1호에 이미 대부분 국회를 장악해서 체포 의결을 막았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혐의, 이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날 관저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와서 의도적으로 출입을 막았다는 식의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소환 조사도 했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규명돼 있는데 이거를 또다시 넣어서 처음부터, 원점부터 수사한다고 하면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5호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시민사회 인사 등을 납치, 고문, 사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 수사대상으로 오려면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그 부분은 또 다른 추가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납치, 고문, 사살 등의 구금시설 까지 마련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이 현재 의혹 제기 대비로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8호가 제일 문제인데, 8호는 사실상 거의 대북정책을 상대로 해서 외환유치라고 하는데 외환유치의 근거가 됐던 것이 관련 피의자의 수첩에 기재돼 있었다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일 텐데 이것을 외환을 다시 넣어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이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10호에 보시면 ‘1호부터 9호까지의 사건에서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이라고 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시민단체나 누가 고발했던 사건이든지 다 고발장을 가져와서 그중에 선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에는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대어서 9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담한 행위, 관여한 행위도 들어가 있고요. 또 11호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주요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 외에 새로운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결국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야 돼서 일단 이 정도 하고 추가 의견은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박군택 위원님.

**○박군택 위원** 김석우 차관 말씀에, 권한대행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8호 이 부분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면 좋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를 들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라고 한다든지 해서 뭔가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내란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군택 위원** 그런데 앞의 그 혐의도 밝혀야 할 어떤 혐의의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저질렀다고 목적 부분 비슷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범위가 너무 추상적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시기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렇게 돼도 문제는 어떻게 보면 12·3 비상계엄과 무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대북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서 약간……

**○박군택 위원** 그런데 저 내란이, 비상계엄이 갑자기 실시된 것으로 알았지만 가면 갈 수록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왔다는 내용이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선후보 당시부터 김용현이 계엄령 선포해서 쓸어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나는 기사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하면, 너무 추상적인 용어를 쓰다 보면 수사 범위의 특정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취지는 기본적으로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독자적인 범죄라기보다도 원래 제안하신 분들 생각도 내란을 유발하기 위한 계엄 선포 요건 충족을 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태를 했다라는 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외환유치 범행이라기보다는 내란을 예비·음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국한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

면 그것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다 해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 얘기를 먼저 조금 하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라서 위헌적 요소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의 말처럼 야당 추천 특검이 위헌적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특검 자체는 미국……

○**서영교 위원** 잠깐……

야당 추천의 특검이 언제 언제 있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야당 추천이 처음에 도입된 게 내곡동 사저 특검이었고요.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서영교 위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곡동 사저 특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첫 번째.

○**서영교 위원** 두 번째는……

○**법무부차관 김석우**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고……

○**서영교 위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도 야당이 추천했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드루킹 특검은 당시에 여당이 배제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2단계 추천으로 해 가지고 야당이 추천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선별하는 2단계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해 봤을 때 여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천 절차에 야당이 관여……

○**서영교 위원** 말씀처럼 그래서 이명박의 내곡동 그다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추천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것이 위헌적이어서 안 된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특별검사의 발동 요건을 정하고 추천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에 권력이 약간 집중된 측면으로 권력 분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할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사건과 현재 사건의 차이점이 그 사건에서 여야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절차를 통해서 선발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과……

○**서영교 위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게 있었다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당시에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특별검사가 추천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거든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특검이 된 사례는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처음에 2003년도 대북송금 특검 때는 당시 여당은 반대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있었던 측근 비리 사건에서도 사실은 여야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재의 요구를 하셨고, 다음에 2007년도에 BBK 특검에서는 당시 야당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때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도 충분히 있어 왔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충분히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다음에 야당의 추천만으로 된 것도 있어 왔단 말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때 그 시기와 그 사건 특수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상태예요. 검찰이든 정부든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에 해 왔던 것에 비춰 보면 딱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형태대로 이미 합의된 특검이 진행된 사례도 있고, 여야가 합의되었든 안 되었든 야당의 추천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최순실 국정농단에는 그래서 여당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게 됩니까?’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가능합니다’라고 판단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정부는 윤석열의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한 특검 때부터 야당 추천은 안 된다며 집요하게 여러분은 위헌적이라고 했으나 그것은 위헌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밝혀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수근 상병 관련해서도 그렇게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다는 것은 다 나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채수근 상병이 죽어 갔고 그것을 무마시키는 과정 속에서 군 항명 수괴라고 하는 박정훈 대령 사건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든 어제 무죄가 났어요. 제가 그전에 군사법원에도 갔다 왔고 어제도 이성윤 위원하고 갔다 왔는데 하여튼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유죄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 다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현 시점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법원장 제삼자 추천이라도 우리가 가 보자. 왜?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한동훈 당대표가 추천하고 요청했던 그 정도라면 윤석열 정부랑 다 합의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내란을 조사하다 보니까 내란에 관한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김용현 보고서가 나오고 문상호가 나오고 노상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차관 말씀처럼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런 유도가 있었

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충분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8번 앞에다가 ‘내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그다음에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이렇게 한다면…… 범위가 15년 전, 몇 년 전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내란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것들도 수사는 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 말은 김석우 차관이 쓴 말을 제가 지금 쓴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서 8번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번과 2번 이야기를 했는데 2번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혐의, 제가 보기에도 이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 2번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2번을 좀 더 특별하게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혐의……

제가 실제로 국회에 들어오다가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와서 담을 넘었는데요. 제가 요즘 병원 다니느라고 병원일지가 생깁니다. 저를 밀어서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온몸에 명이 들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쳐서 국회에도 제가 다쳤다는 것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경찰에게 막으라고 한 거예요. 요 내용은 출입을 방해한 혐의, 이 혐의가 어떻든 경찰 이런 데, 주진우 위원은 추경호 의원으로 특화됐다고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보다 윤석열 정부가 군과 경찰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막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막은 행위가 저와 같은 경우, 아마 다른 의원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8번은 ‘내란을 유발하기 위한’, 그리고 2번은 그렇게 살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진우 위원께서 5번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시민사회 인사 등과 관련한 고문, 체포 그리고 감금 관련한 이야기는 실제로 현재 수사 중이고 이게 제2수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꾸린, 노상원이 문상호를 시켜서 꾸린 그 조직이 정리한 내용들의 하나입니다. 그 수첩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 팔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8번을 그렇게 정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지금 박균택 위원님하고 서영교 위원님이 법무부장관대행이 문제 지적했던 부분 또 주진우 위원님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일단 8호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시기, 시점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의견도 계시고 앞쪽에 내란이라는 용어의 수식을 통해서 제한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1호부터 이렇게 쭉 보면 비상계엄, 계엄 해제 또 그 비상계엄과 계엄 해제를 전제로 한 집행 과정 그다음에 5호는 그런 수식이 없어서 좀 수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6호에는 내란. 그래서 계엄, 내란 이런 걸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수사대상을

명확히 앞에 했습니다.

했는는데, 8호는 일옹 차관 지적처럼 그러한 수식이 없고, 물론 상식적으로는 다 이번 내란과 관련된 파병이라든지 확성기라든지 유인물 살포라든지 드론의 침투라든지 그렇게 보여지지만 문언상으로는 불분명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전쟁 혹은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협의가 본질적인 협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당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제 생각은 12·3 비상계엄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파병이라든지 또는 확성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차관이 지적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제 의견으로 하기로 하고요.

여당 위원님들, 일단 8호부터 한번 좀 중요한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해 봐 주시지요.

### ○유상범 위원 일단 8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분쟁지역 파병, 아마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상정하는 것 같고요. 대북확성기 가동은 북한의 반복되는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써 진행된 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확대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반북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것은 주장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구체적으로 그것도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사실은 이 행위들이 12·3 비상계엄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기재를 한다면 어떤 형태의 기재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하에 있었던 정상적인 외교정책 또 대북정책을 전부 다 검증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재는 사실 차관이 순간, 특별한 준비 하지 않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형태의 기재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식의 규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정리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2호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협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출입을 막았다고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군이 출입을 막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행위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협의, 이렇게 기재를 해 버리면 결국은 주진우 위원이 주장했듯이, 추경호 대표를 고발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대체 행위 주체가 누구냐 이런 제한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5번의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이게 아마 소위 체포조 얘기가 나타낸 것 같은데, ‘납치, 고문, 사살’ 이것은 김어준 씨가 과방위에 나와 가지고 느닷없이 폭로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 허위사실이다라고 해 가지고 내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이 안에 넣는다는 것은 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외려 이것이 선전·선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

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항까지 보면 대체로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특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7호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면 7호의 경우에도 1호부터 6호까지의 내란 혐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 이건 구성요건 부분에 대한 조사인데 갑자기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선전·선동은 내란을 할 것을 선전·선동한 것이라 그래야지, 서술…… 법문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즉 과거 것의 내란에 대해서 찬반이 있거나 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지금 내란의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9호를 보시면 기타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기타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사대상을 하면서 기타의 방법이라고 지정을 한다면 아무거나 다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형식은 수사대상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대상을 무한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호의 경우에도 외환 행위를 거기서 명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호에서 이 규정은, 이것도 항상 제가 지적하던 부분인데 1호부터 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 혐의자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인지사건,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관련 범죄 수사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사실이 인지된 것, 별건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게, 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 그렇게 민주당이 관련 사건을 제한하는 그 규정과는 정반대되게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별건사건 수사하게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진행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위원 에이, 반대를 위해서……

○유상범 위원 거 참 이 상황에, 서영교 위원!

○서영교 위원 아니, 이게 별건사건 수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이 규정을 법률……

○서영교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혐의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이면 별건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유상범 위원 서영교 위원!

○서영교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별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평상시에 하던 얘기랑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유상범 위원 내가 평상시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특검법을 한 6개월 정도 계속 1소위에서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특검 대상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다 이렇게 불확정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법이 나올 리가 없겠지요.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

○이성윤 위원 저는 내란 행위를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정말 김건희·윤석열의 불법적 행위를 계속 눈감아 주고 여당은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이러는 바람에 내란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는데.

내란 특검법이든 과거에 김건희 특검법이든 수차례 해 보면 항상 수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다, 애매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차관님 말씀도 8호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 정부의 것까지 너무 포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특검법 표제가 뭐냐 하면요 윤석열 정부예요.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있었습니까? 2년 전에 생겼던,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후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입니다. 그 이전 것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시기가 너무 넓다 그러는데요. 김용현 공소장을 보니까 윤석열은 뭐라 그러냐 하면 혼내 주려고 잠깐 한번 했다는 거예요, 야당 혼내 주려고. 그게 무슨 내란죄가 되냐고 말했는데 공소장을 보면요 3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3월부터. 그것도 북한이 열한 번 나오고 비상대권, 비상조치, 특별한 조치가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검찰, 경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넓게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신생 조직인데다가 수사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걸 보면 1호나 2호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6호나 5호 그다음에 8호 정도는 수사기관이 손댈 겨를이 없어요, 지금 보면.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계속 걱정하면서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라는데 수사기관에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검법 내용에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넣은 겁니다.

이게 수사대상을 보면 내란 행위 목적도 아니고…… 왜냐하면 NLL 여기서 전쟁을 유도했다든가 공격을 유도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12월 3일 이전에 잠깐 준비해 가지고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그 일련의 행위가 내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밀 작업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외환 유치하려고 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수사해 봐 가지고 이게 내란을 위한 밀 작업이었다, 분위기 조성 작업이었다 그러면, 수사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분위기 작업은 서론으로 넣으면, 모두 사유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수사대상이 왜 너무 넓다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결국은 특검이 이번에 출범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사대상이 많긴 하지만 3개,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주된 인물들은, 피의자들은 다 구속 기소됐거나 수사 중이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수사 중에 있는데 특검이 과연, 이렇게까지 자세히 수사하도록 하지 않으면 특검은 결국 검찰 경찰 공수처의 뒤치다끼리만 하다 만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은 좀 상세히 넣어서 국민적 의혹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더 할 말씀 있어요?

○**주진우 위원**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가동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성윤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사의 대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간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게 넓혀 놓으면 했던 사람들을 또 불러서 계속 같은 걸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이 적법절차에 좀 어긋난다는 것이고.

아까 1호, 2호 말씀을 하셨는데 1호에도 보면요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7쪽을 한번 보십시오. 개별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례라고 해 가지고 삼성 비자금, 한국철도공사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규정들이 뭘 수사해야 되는지 정확히 한정돼 있고 굉장히 딱 압축적으로 뭘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호에 따르면 추경호 대표 및……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호 대표가 관저에서 식사했다는 의혹까지도 막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수사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로, 즉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8호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및 증거인멸, 범죄은폐 이런 규정은요 다른 특검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정입니다. 기타의 방법이 뭐지요?

법무차관님, 이것 이렇게 기타의 방법이라고 해 놓으면 뭘 어떻게 관여했다는 건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직관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주시면……

○**법무부차관 김석우** 문언상으로는 예시를 금방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아까 10호도 논의를 안 해 주셨는데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했는데 옆에 7쪽에 보십시오,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 비자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딱 고소·고발된 사건의 그 사건명이 특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국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일반 국민이 고발한 사건도 엄청 많을 텐데 사실상 수사 범위가, 그 고발장을 다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나요?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11호에 일반적인 관련 사건을 다 포함하면서도 9호·10호를 괜히 그냥 불필요하게 전에 없던 규정들을 넣어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수사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도 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러면 다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걸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법상 적법절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이고.

특히 2항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게 규정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이 판단해 가지고 뭔가 좀 과도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때 그걸 거절했을 때 전부 이 규정을 걸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특검법에 없던 규정들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걸려 내는 게 저를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사대상이 정해지고 이게 어느 정도 수사

를……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온 부분도 많으니까 어느 부분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으니까 수사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그래서 인력은 이렇게 배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걸 주르륵 다 넣다 보니까 도저히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수사대상 부분만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예측 가능한 법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야당 위원님들……

### ○박희승 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사라는 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행위 내지는 또 외환까지 포함됐지만 어쨌든 수사하는 범위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다 해서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불기소하면 다시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수사 인력이라든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건이 고소·고발이 된다 해도 아마 수사기관 특별검사가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 법안 만들듯이 이렇게 심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별건수사의 길을 열어 둔다 이런 비판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런 현재 결정례도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다 그런 선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거면 그 사람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 줘야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특검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벌어진 내란 행위나 외환과 관련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특검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특별검사에 임명될 정도의 식견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수사 범위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또 수사해서 아니면 털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 ○소위원장 박범계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오늘 내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전체회의 때도 지금도 내란 진행 중이다 하시는데, 전두환 내란사건에 관해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지역을 갖다가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고 전국 계엄을 하면서 각종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하면서, 거기서 한거는 비상계엄을 종료한 81년 1월 24일 그날 내란은 종료됐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란도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내란을 가지고 자꾸 현재도 내란 중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도 블랙요원들이 청주공항에 나타나고 그들이 폭탄을 소지하고 있다고 막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국방부차관이 나와서 12월 4일 날 전부 원대 복귀시켰다 그리고 현재 영내 또는 영 근처에서만 군사훈련을 한다 그리고 민간인 블랙요원은 없다고 아주 명

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또 다음 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서도 이미 12월 4일 날 내란이라는 것은 종결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그와 관련된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또 서로 간에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내용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란 선동이다, 내란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군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내란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그냥 고발했어요, 다수의 사람들. 그러면 그거 다 조사받으실 겁니까? 이거는 하나의 개인의 권리의 문제고 어디까지나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받는 침익적 효과가 위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사대상을 정할 때도 가능한 정교하게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주고 또한 수사하는 특검에게 그 사람이 뭘 수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의혹 제기되는 것마다 다 수사하고 그 의혹 제기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끊임없이 이 수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희승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도 법사위원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특별검사에 임명되신 분이 교통정리를 하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지……

○**유상범 위원** 아니, 사람에게 기회를 주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해 줘야지요. 기준도 없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선의의 뜻에서 적정하게 잘라서 수사해라’ 이렇게까지 재량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희승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서로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법원장님 이 만약에 추천하시면 또 양식 있는 훌륭한 분을 추천하시겠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범죄가 있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소·고발된다고 다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무혐의 처리할 건 무혐의 처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 특별검사의 양식에 맡겨야지. 물론 대법원장님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래도 법률 전문가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걸 충분히 다 거를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서영교 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소·고발하면 검사가 다 수사하나요? 차관님, 고소·고발한다고 다 불러서 수사하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지는 않지요.

참고로 예전 특별검사법 중에 고소·고발이 있는 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그런데 그때는 방치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라 특정이 좀 다르긴 한데 이 건과 같이 고소·고발 사건이 예시가 된 BBK 특검에 이렇게 설시가 돼 있습니다. 위 각호의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이 하나 있었고, 이게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폰서 특검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사건. 그래서 스폰서 특검하고 BBK 특검에는 이 제정안과 유사하게 진정·고소·고발 사건이 돼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 가동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다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특검이 도입됐을 때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첩받기는 받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영역과 처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행위의 고소·고발도 있고 하지만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뻔히 아시잖아요. 뻔히 알면서 이 모든 걸 다 한다? 지적됐다고 모두 다 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좀 더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된 거고. 그렇지만 이 내란사건이 워낙 위중하니까 검찰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다 걱정거리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다른 것에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란이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해요. 대통령이 권력은 다 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 내란의 공모 그 다음에 선전·선동 이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란수괴 그리고 공모, 선전·선동 그리고 또 여기에 부화뇌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말씀하듯이 어느 의원이 선전·선동, 그래서 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걸 빼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선전·선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양해하시고 이번에는, 수사하면서 과한 수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제대로 된 범죄에서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과하게 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범위를 무작정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리고 경찰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여러 가지 조항이 좀 넓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일단 제2조 수사대상에서 1호는 군경에 의한 통제행위, 그럼으로써 국회의 권능이 무시됐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2호는 국회법상의 표결·출입 방해행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법에 쳐별조항이 있지요.

다만 여당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특정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느냐? 이 문언에는 전혀 그런 점이 없습니다. 왜 이걸 개인 추경호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단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날 것이고 근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이 행위는 국회법상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선진화법상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웅.

그다음에 5호도 근거가 없다, 이 말씀도 지금 현재 입건돼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

령관의 수첩 등에 몇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검찰이 그렇게 무겁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특검도 역시 수사해서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로 어떤 결론이 왜곡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란 행위의 선전·선동 혐의, 7호와 관련해서 과거 내란에 대한 이의 제기까지를 수사대상으로 삼느냐라는 말씀인데 단순한 의견의 개진은 내란의 선전·선동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의 개진 정도를 넘어서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내란의 위법 상태가 항존하는 상태에서의 그러한 가담 행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8호가 문제인데 역시 아까 서영교 위원님 지적처럼 그 앞부분에 ‘본건 내란’ 혹은 ‘12·3 비상계엄을 빙자해서’라는 수식을 앞에 두면, 물론 이 특검법의 제목이 ‘윤석열 정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수식어를 두면 이 사건, 내란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호의 ‘고소·고발사건’ 이것은 차관도 지적했듯이 과거에 여러 차례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생뚱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은 열세 차례의 특검마다 항상 규정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상범 위원** 11호와 관련해서 과거에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형사소송법 상 별건수사 금지 규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별건수사 금지 규정이 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 원칙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규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소위원장 박범계** 예, 유상범 위원님.

그러니까 만약 충돌 문제로 해석하신다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소·고발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리 있으신 말씀 같은데 11호까지 열거한 내용에 포섭되지 않은, 그러나 이 사건, 내란 행위와 직접 관련된 고소·고발장에 적시된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앞에 ‘직접 관련된’이라는 ‘직접’으로 제한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별건수사, 12·3 비상계엄 혹은 외환과 관련된 포괄적인 범죄가 아닌 완전히 별건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서영교 위원** 직접?

○**소위원장 박범계** 예.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주진우 위원** 제가 조금 의견 말씀드려도 되나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주진우 위원** 일단 저는 내란 선전·선동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내란죄라고 하면 지방정부를 두고 내전이 벌어져서 서로 전투를 하고 상당 기간 폭동과 소요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하는 건데요. 이것은 비상계엄이 빨리 해제가 되는 바람에,

사실 포고문을 발표하고 그사이에 무슨 매개되는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뭘 주장하시는 거냐 하면 계엄 해제가 다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안 부르는 게 말이 되냐는 둥, 지금 현재 체포 영장의 효력을 가지고 다뤄서…… 이것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법 영역인데.

그런데 ‘거기에 가담하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이다’, 그리고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면 ‘내란 선전·선동하는 거예요?’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전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내란 행위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란 선전·선동을 넣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검은 기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선발을 하더라도 지금 수사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지 않으면 적법절차를 넘어서서 과잉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를 특검이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사안이 중하고 실제 처벌이 되는 것들이라면 특검이 끝나고 나서라도 특검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지금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수사가 끝나고 나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내란 관련 죄명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모든 사건을 다 가져다가 특검이 보고 선별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야 간 정치적인 대립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법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라 또 정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혼란상을 막고자 해서 특검을 만드는 건데 더 혼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선전·선동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등등 해서 66건을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66건 고발한 내용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조차도 다 못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 줄 알고, 고소·고발 사건을 전부 다 넣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특검은 수사대상 그 66건들 중에 보고 있다가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대상이 기준 특검 대비 너무 지나치고 넓을수록 위헌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고 군이나 군대가 들어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대상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이미 수사도 다 하고 있고 그 부분 수사도 이미 엄청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포함하지만 이 영역들 보면 굳이 1호와 별도로 2호를 넣은 게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어차피 수사대상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문구의 차이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 다 걷어 내도 수사 할 수 있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사건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마저 다 하지 않습니까? 역대 특검도 다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수사 범위만큼은 그냥 얼렁뚱땅 몇 단어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특검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 여야가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꼭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범계** 예,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지금 내란죄가 끝났느냐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박균택 위원** 홍경래가 잡히지 않았는데 홍경래의 난이 끝난 겁니까? 이괄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괄의 난이 끝난 것인가요?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분명히 한남동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위원** 직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범죄자로서 지금 잔존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직무 정지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행위를 하나요, 구체적으로?

○**박균택 위원** 체포를 안 하고 사법부의 영장, 경찰·공수처의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렇게 버티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감싸고 제2의 내전을 운운하고 일부 정치인은 거기 가서 그것을 응호하고 이런 행태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66명이 됐든 아니면 고소·고발장이 쌓쳐서 1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단은……

○**주진우 위원** 그 견해에 따르면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소위원장 박범계** 주 위원님, 듣고 하세요.

○**주진우 위원** 예.

○**박균택 위원** 특검과 사법부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질 텐데 수사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수사대상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를 보면 알듯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치인을 처벌하자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이의를 제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8호의 경우에 분명히 뒤에 보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라고 해서 이미 목적이 뒷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까지 굳이 목적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시기로만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쨌든 불만이긴 합니다마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희승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지금 수사 범위라든지 대상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재판한 선례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검찰도 있고 또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검사도 굉장히 공정한 분이 임명될 것으로 믿는데 그분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를 심하게 수사해서 아마 처벌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여야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사 범위를 정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좁게 좁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넉넉하게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자기들 재량껏 그 시기 내에서, 수사 인력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수사를 매듭짓고 재판을 끝내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반 현법 질서를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인력도 한정돼 있어서 아마 다 하지도 못할 겁니다. 자기들도 아마 회의를 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해서 수사를 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여야 간, 우리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훨씬 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빨리 진정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이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또 제대로 기소해서 재판하는지 그것만 감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주진우 위원님, 더……

이 정도 일단 하고요.

**○주진우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수사대상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 다 공히 문제점 혹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기로 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격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예전의 상투적인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대법원장이 두 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것 자체로는 과거의 사례도 네 차례가 있었고 또 과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도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고 또 논의도 꽤 됐던 사안인데, 일단 이 논의는 넘어가서 다른 걸 좀 보기로 하지요.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5항에 보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간주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내가 임명을 간주하게 해서 특검을 발족시키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조항입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의 예외를 의회에서의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됐을 때 특검의 삼권분립의 위헌성을 치유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검의 위헌성 치유의 전제조건인데 이 규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사실상 법으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 규정을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을지. 여러분께서 의도하신다면, 그래서 합의로 간다면…… 이게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그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조항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성윤 위원** 있었습니다. 그전 법에 있었어요.

**○유상범 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서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재판관이나 대법관이 국회 통과가 됐는데 대행께서 임명을 않고 계셔서, 특별검사도 지난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또 그런 우

려가 있으니까 불신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삼권분립인 특검 제도를 우리가 합헌성을 인정할 때, 현재 규정도 인용하셨지만 거기서도 야당의 일방 추천이지만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합의가 되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이 규정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이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이 규정을 넣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검 제도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 특검 임명을 강제하겠다는 거니까요.

○**이성윤 위원** 그렇지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않고, 지금 최 대행도 추천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정말 불법 계엄이 잘못됐고 내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설특검 임명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최민희 의원을 무려 7개월간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무산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상설특검 임명 요청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의장님이 권한쟁의 신청했겠어요?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사대상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 중에 얼렁뚱땅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법의 이 조항을 만들 때 민주당의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 문구 하나하나 잘 생각해서 만든 것이지 얼렁뚱땅 만든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런 표현을 쓰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은 왜 이렇게 특검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 조항은 이 정도로 하고요.

뒤로 가셔서 권한 및 의무는 다 기준에 있던, 과거 특검법에 있던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사위원회 중에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분이 있습니다. 특검법안 8조 4항에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현재 이 특검법안은…… 과거 박영수 특검 때도 사실 박영수 특검이 그런 애로사항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고심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1심에 한해서 겸업 금지를 하고 2심, 3심은 좀 자유롭게 사건 수임 또는 다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조항을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장동혁 위원님은 한 말씀도 없으신데……

○**장동혁 위원** 저는 특검에 대해서 아까 전체회의에서 이미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제기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글쎄요, 재판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특검을 고검장으로 보하고 특검보를 검사장급으로 보하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그분들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해서 1심을 하고 2심부터 검업 금지를 해제한다? 사실 그렇게 되면 첫째, 이분들이 당신의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오염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수사·재판 기간도 좀 축소가 됐고요.

○**주진우 위원** 수사기간이 종전 안보다 축소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이 사안 내용 대비로 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수사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사기간이 길고 또 뒤에 브리핑 규정이 붙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기밀이든 뭐든 다 해제하고 볼 수 있게 되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견이 있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수사대상을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유튜버나 이런 것 수사하려고 특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의 수사는 특검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그냥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충분하고요.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외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수사대상이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 떠오르질 않아요. 했던 것을 다 반복하게 될 것 같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간이 너무 길면 뭐라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평소 같으면 들여다보지 않을 내용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간은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사기간을 더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유상범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성급하게 어제 발의하고 오늘 이렇게 법안을 상의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차관님, 수사기간이 220일 정도였다가 150일 정도로 준 거잖아요. 준비기일 20일이 많은가요, 특별히 다른 데보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른 특별검사법에 비해서 장기는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준비기일 20일이 많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다 합친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장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서영교 위원** 연장 두 번이지요, 30일씩 두 번?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아니, 이렇게 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어요? 자꾸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많이 줄였고. 이렇게 큰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자꾸 작게 보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준비기일 20일에 본수사기일 그리고 30일 정도 두 번의 연장, 이 정도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다 되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내고 공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너무 반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잘 끊어 내셔야 되는 시점이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걸 왜 국민의힘이 다 떠안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지 지금 시간이 다 갔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판단하는데 ‘지금 너무 빠르다’ 이렇게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빠르다고 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에요?

○서영교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준비기일이 더 늦었다, 왜냐하면 열아홉 번이나 나와 달라고 그랬는데…… 등기도 보내고 했는데 수취를 거부해서 더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피치사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3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는 동안. 사실 비상계엄 안 했으면 탄핵도 지금까지 안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셀프 탄핵 들어오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만 망가지면 괜찮아요. 정치권도 힘든데, 경제 다 망가졌는데 언제 자꾸……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 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대법원장 추천 원하지 않습니다. 추천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리고 수사해 본 사람들이 수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하시되 정말 수사를 잘할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전제를 달면서, 기일도 이 정도면 최대한 줄여서 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 그렇게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수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 수사를 해 보니까 세월호를 운전했던 선장 구속기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선장만 구속기소하면 나머지가 문제없을까? 오히려 그 나머지 의혹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 바람에 수사 전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당연히 구속기소해야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백골단이 국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 보면 백골단이 시민들을 보고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시민들은 백골단만 들어도 몸서리치고 그러는데요. 결국 윤석열은 당연히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지금 내란에 관련된 내란 선전·선동 플러스 모든 과정이 정말 제대로 밝혀져야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내란 행위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수사대상 8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야 다시는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안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사실상 120일이고 30일 더 추가하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수사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안대로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오전 전체회의에 나온 것처럼 국민들은 정말로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고 내란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두통까지 겪고 있는데,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원안유지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 정도로 하고요.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한 안 19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생각은 현재 내란 특검안이 담고 있는…… 110조·111조 등의 소위 비밀,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외하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거든요. 그 법안에 대해서 자칫하면 중요한 국가기밀들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서 수정의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수사대상과 무관한 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에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항은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바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3항에 대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지요. 3항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낯선 그런 부분이라 이것 자체로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일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이성윤 위원 지난번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항도 특검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를 누설하면 처벌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규정으로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2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범계 예.

19조는 그 자체로 지금 항이 없고 이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는 소위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피압수 대상 기관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거절·거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항을 구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수사대상과 무관한 기밀은 압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연히 지득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의문인 게 예전에, 제가 수사를 해 보진 않았지만 과거에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압수수색의 경과를 전후로 보면 실제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 보기 전까지는 이게 군사상 기밀인지 국가기밀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 규정을, 설령 수정 조항을 그렇게 하더라도, 주의라는 조항을 두더라도 꾀압수 대상 기관에서는 이걸 근거로 다 군사기밀이다, 공무상 비밀이다라고 압수수색 자체를 원천 거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정 조항을 두게 되면. 다만 사후적으로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이것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지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유상범 위원 저는 그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약간 일리가 있다는 말은 절대 안 하지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 규정조차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걸 해 놓고 만일 여기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사람을 단순히 방치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지득한 정보를 누설한 사람은 벌칙 조항에서라도 명확하게, 새롭게 규정을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규정에 의하면 이미 압수수색 제한 자체를 풀어 가지고 누구나 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정보가 누설됐는데 처벌 규정은 또 없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23조 벌칙 규정.

○유상범 위원 8조 1항을 위반한 경우로 돼 있지요, 6조 4항, 8조 1항. 이런 것도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국가안보와 국가비밀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수사팀에게 모든 국가기밀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말씀하세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저는 법원행정처의 제안이 사실 평시에 정상인을 상대로 한 수사 같으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 이후의 결과를 토대로 돌려주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집행 과정에서 주의 규정을 두면 법원의 영장까지도 집행을 거부하는 자들이 또 이걸 굉장히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이상한 행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만 조금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8조 1항이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비밀—다 수사기밀이지요—그것의 누설 금지 조항을 일반 조항으로 두고 있고, 지금 벌칙 조항에 8조 1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가니까 뭐랄까요, 특별히 강조 규정으로 군사상 기밀, 여기 나오는 형사소송법상의 공무상 비밀, 즉 수사대상과 무관한……

그것도 이상하네요. 특별히 그 조항에 대한 기밀 누설을 엄하게 처벌하는 뭘 둬야 되는 건지…… 굳이 않아도 여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23조 1항에.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법안 검토가 다 안 되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말씀드려도 됩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주진우 위원 저는 1항 자체, 이런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사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지시사항이 밑으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듣거나 지시받은 사람도 많고 관련된 참고인들도 많아서 충분히, 사실관계 규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제한 규정들은 다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한 규정을 둔 것인데 군사상 비밀과 압수 규정도 없이 무조건 어디든 압수수색 가능하고 승낙 없이도 뭐든지 다 가능하다 또 공무상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엄수 의무도 여기서는 해제한다 이렇게 돼 버린다면 한시적인 특검이 사실상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다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경증을 따지지 않고 다 똑같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의 해당 규정에서 이런 규정들을 넣어서 기존의 증거수집 절차와 다른 절차를, 극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영장 없이도 다 압수수색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넣을 수 있지만 안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은 저는 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주진우 위원님 의견이시고요.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범계 예.

○서영교 위원 만약에 19조에 이렇게 저희가 넣잖아요. 이것을 압수수색할 때도 다 영장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물론입니다.

○서영교 위원 영장을 받아서 가는 거고. 이렇게 넣어 놨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세요’라고 해 줘야 가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영장을 받아 가면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수색은 당연한 해석으로 굳이 영장에, 판사가 그건 확인하는 의미인데 그것 없이도 체포영장만으로 사람을, 체포대상자를 수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확고한 법원 판례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긴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요,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110조의 적용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요. 체포를 위한 수색은 다 가능하다라는 게 확립된 법원의 견해입니다.

다만 지금 110조·111조의 물적 수색,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인 경우에는 110조·111조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법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든 경찰청이든 대

검이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발부받고 가면 피대상 기관이 110조·111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건 국가·군사 기밀이다, 안보상의 비밀이다 해 가지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사실상 압수수색을 못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을 이 특검 조항에다 넣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 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주의를 요하도록, 수사대상과 무관한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압수하는 것은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열어 보기 전에는 그것이 군사기밀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런 제한을 두게 되면 그걸 이유로 해서 압수수색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종전의 관행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사후적으로 수사대상과 무관한 군사기밀을 지득했을 경우에 반환하는 조항은 기존에도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우선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수사해야 될 대상이 내란죄이기 때문에 주로 군 관련한 곳, 국정원 관련한 곳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한 곳, 대통령경호처 등등 이 사람들이 전부다 중대한 군사적 아니면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니까 지금 하나도 되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그런데 이 범죄는 내란에 관한 범죄고 비상 계엄에 관한 범죄고 대통령이 그 조직을 동원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 조항으로 계속 내밀면…… 실제로는 이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항을 넣어 줘서…… 사실 이 조항을 안 넣어도 법원이 ‘지금 들어가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또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와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은, 여기에 쓰지 않아도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이게 무관하면 반납하게 저희가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무관한 건 압수수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든 눌러 보고 열어 봐야, 합의 봐서…… 그래서 옆에서 변호사가 지키잖아요. 그냥 막 열어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그 수 많은, 변호사가 같이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열고 필요한 건 취하고 아닌 건 놓고 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기본이어야 되고.

지금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늦는 것도 이해는 하면서도 원래 다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특별한 시기니까 특검을 하는 거라 이걸 넣어 주시고, 저희가 19조(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를 넣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보셔서 어떻든 아까 말한 반환, 반환은 저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러나 주의, 주의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말씀처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절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18조를 한번 봐 주시지요.

18조에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번 내란죄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법원에—정확하게는 서울 중앙군사법원이지요—기소된 여러 사령관들의 기소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언제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사이에 공수처 혹은 검찰에 의해서 추가 기소될 사건들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조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는’이라고 돼 있지 이첩 요구 조항들이 없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특검이 개시되면 기존의 군사법원 사건이든 서울중앙지법 사건이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든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든 이 법에 따른 특검이 이첩을 받아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이해되시지요? 그럴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따로 기소를 해 가지고 이중 기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 범위에 관한 문제점. 또는 이중 기소를 피하다 보면 소위 특검의 수사와 기소 영역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 매우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공소유지 기관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거기에 상호 모순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개시가 되면 기준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있는 사건들도 다 특검이 이첩받아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장동혁 위원님은 여전히 원천적으로 이 논의를 거부하시지요?

○장동혁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공수처든 검찰이든 군검찰이든 했던 내용들은 특검이 되면 전부 다 이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김성완 저번 법안에서는 특별검사 임명 전에 다른 조사·수사·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행위가 특별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특별검사의 뭐 한 걸로 본다?

○전문위원 김성완 그러니까 현재의 특별검사가 전에 했던 특별검사가 행한 것을 승계 받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상설특검 같은 경우가 승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검찰, 공수처 등등이 하는 것은 이 특검이 진행이 되면 모두 다 이첩해서 승계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김성완 예.

○서영교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소위원장 박범계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건 수사 중인 사건에 한하는 거지. 기소돼 가지고 재판 중인 사건까지 이첩받는다고 하면 외려 제대로 된 공소유지를 못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수사에 집중해야 될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다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 특검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보고 공판까지 수행하라고 그러면 수사 아예 못 해요, 재판만 하지. 그게 핵심인데. 취지는 좋은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13개의 특별검사법이 통과가 됐고 그 법에도 모두 다 이첩 조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냐고 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도입되면 자료를 다 넘겨주고 수사를 중단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유사한 조항이 제정법에도 있는데, 6조 3항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6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과 압수 등등 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6항을 보시게 되면 ‘제3항·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동안 13개 특별검사법도 다 이와 유사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첩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쓰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통해서 사실상 인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아니야, 차관님, 그건 역사적 맥락을 몰라서 그렇고. 과거에 특검은 봐주는 경우, 기소를 함이 마땅한데 기소를 안 하고 봐주는 경우에 특검이 받아 가지고 수사 자료를 이첩받아서 기소를 하는 그러한 예들이었고. 지금은 너도나도, 소위 말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열심히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소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놔두면 이 특검이 도입된 이후에, 여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듯이 그러면 일단 수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줄 잡듯이 다 뒤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중 기소, 중첩 기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소위 공소사실의 동일성 문제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무혐의 해 준 것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나도 세 수사기관이 경쟁하다시피 해 가지고 가장 빨 빠르게 군검찰이 다 기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특검이 도입돼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기소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요.

그랬을 때 이 특검법의 내란의 역사적 맥락이나, 이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놓고 보면 결국은 특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취합해서 수사는 물론이고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것이 이 특검의 성격에 맞는 것 아니냐는 게 내 생각입니다. 다른 거지요, 지금?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전에 유전개발 특검도 그렇고 박근혜 특검도 그렇고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특검이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 수사는 중단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존 특검과 지금 사항의 차이점이 기존 특검에는 검찰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협조만 있으면 수사를 중단했다가 자료를 다 넘겨 가지고 만약에 한정된 시간 내에 못 했을 경우에 다시 이어받아서 해 왔는데 지금은 검·경·공수처, 3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협조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그것 다 받아 가지고 이미 다 기소돼 있는데 뭘 더 받으시려고? 받을 게 없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공소유지의 집중성·통일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채수근 상병 관련한 특검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이첩한다, 공수처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첩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도 공수처가 있고 검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상범 위원이 다 기소되고 재판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할 여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윤석열 중심으로 가는 특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걸 다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걱정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3항에 자연스럽게 요구하면 넘겨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채수근 상병 때 특검 준비를 할 때처럼 이 부분은 이첩해야 한다, 특검이 요청하면 이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범위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저러면 공소유지를 전부 특검이 해야 돼요, 그 사건을. 재판에 지금 관련된 자료가 10여 명이 넘는데, 각각의 사건이 복잡한데 특검 몇 명이 앉아 가지고 공소유지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내 공소유지만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김용현 국방부장관부터 그 각각의 사안이 얼마나 예민하고 어렵습니까.

그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안 내려다가 좀 과욕을 보이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특검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제도를 어떻게 그렇게 운영해.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특검이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직접 유지하고자 할 경우 예를 들어 이송, 군사법원은 민간법원으로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소위원장 박범계** 이첩 요구 조항은 뒤도 그것이 무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균택 위원**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소위원장 박범계** 특검의 수사 역량과 공소유지 역량에 달린 문제이지.

○**유상범 위원** 저걸 하시게 되면, 들이신다면 저는 들여도……

○**소위원장 박범계** 물론 일선 수사 경험이 많은 유상범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설득력이 나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오늘 약간의 모순관계가 있는데 수사대상을 설명할 때 이건 너무 광범위한 수사대상이다라고 걱정하는 일방, 다른 한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 특검이 개시돼 가지고 준비기간 20일이 지난 그 단계에 가서 특검이 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검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꼭지는 윤석열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판단에 의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들은 두고. 그 정도는 뒤도 어떤가 싶어요.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항은 두고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글쎄요, 저는 그 전에……

○소위원장 박범계 유상범 간사님이 수사 전문가로서는 나름……

○유상범 위원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특검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재판만 준비한다고. 재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공판정에 앉아 가지고 증인 신문하고 그런 게 재판의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검이 그 중요한……

○서영교 위원 그건 그쪽에다가 맡기시고.

○유상범 위원 말씀대로 특검이 공판 수행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인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 주면 특검 무력화에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박균택 위원님 의견 좀 줘 보세요.

○박균택 위원 글쎄요, 저는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검법을 하는 이유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뿐만 아니고 관련된 자들을 전원 기소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특검에게, 이게 특이한 특검입니다. 주요 종사자들이 상당 부분 기소가 돼 있고 또 이 특검 준비기간에 물론 기소할 수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출범했을 무렵에 다 기소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공소유지 기관, 수사기관의 검사가 특검에게 공판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특검이 좀 지휘하게 하면 어떨까, 직접적으로 다 공소유지 하려면 힘들어서 수사도 못 하고 또 공소유지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특검이 일선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게 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권, 수사 의지, 수사 역량 등을 다 고르게 종합적으로 관찰했을 때의 판단 부분이 지금 여야 간에 다른 거지요. 사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검찰에 의한 공소유지가 과연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수사 범위를 왕창 넓혀 놨는데 그것과 함께 기존 기소된 사건까지 가져다가 공소유지를 하게 되면 수사 못 한다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위원님, 지금 공소 지휘입니까?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윤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소한 후에 검찰이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해 가지고 결국 다 유야무야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박균택 위원** 아니, 수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공판검사를 파견받으면 되는 거지요, 검사 파견 조항이 있으니까. 수사 당시에는 수사할 검사를 파견받고 공소유지에는 수사에 참여했다가 지금 현재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걸로 신뢰가 가는 사람을 파견받아서 공소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휘권은 파견 조항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시점으로 기준을 삼을 거냐, 수사기간이 최대 150일이거든요. 150일을 다 채우게 될는지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검이 정해서, 지금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적어도 99% 다 기소해 놓고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이 1%만 남았다면 그거야말로 역사성에 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기준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에 관여를 하는 것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성윤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어쨌든 저도 아까 박균택 위원님 말처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특검에게 재량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실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란은 수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를 하려면 검찰을 통해서 되고,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와 공조본이 전체를 마무리하려면 특검을 통해서 기소하고 그러면 공수처의 것들은 이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특검이 검찰 것을 가져오는 것과 공수처 것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위원장님의 물으신 게 뭔지 정확하게는……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서영교 위원** 저는 수사 시작과 동시에, 준비기일에 기소도 할 수 있다고 이번 것에는 이렇게,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 시작과 동시에 언제든 요청하고 필요하면 선택해서 이첩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박범계** 필요한 경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만 두면 특검의 역량이라든지 여타 사정을 다 감안해서 적절한 시점에 넘겨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의무 조항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주진우 위원님, 의견 계세요?

○**주진우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없으세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범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기관의 의견도 들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 조항들에 대한 의견까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세 분 위원님 중에 장동혁 위원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그러시고 주진우 위원님과 유상범 위원님이 몇몇 조항들에 대해서, 수사대상이라든지 또 19조의 법원행정처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유상범 위원 임명 간주 규정의 문제점.

○소위원장 박범계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소속의 위원님들은 현재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해 주셨고, 이 특검이 향후에 발족되는 경우에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상호 모순,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보충의견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해 보면요, 지금 위원장인 제가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의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 8호의 뒤에 있는 부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협의’가 있는데 맨 앞부분에 ‘이 사건 내란 혹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렇게 수식을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소위원장 박범계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렇고.

민주당 위원님……

○유상범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

○소위원장 박범계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는 건데요.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이성윤 위원 예, 괜찮습니다.

○박희승 위원 원안대로 해도…… 왜냐하면 제목에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요.

○소위원장 박범계 특정·제한된다는 얘기지요?

○박희승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 의견은 안 묻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아닌가요?

○유상범 위원 예. 그 정도 규정을 넣은 것 가지고는 사실 제한됐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규정을 예시적으로 대북정책, 외교정책에 대해서 열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를 마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것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대상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앞에……

○소위원장 박범계 수식을 하자는 의견이잖아요.

○**서영교 위원** 예. 법무부직무대행이 나와서, 어쨌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수식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있지만, 당연히 윤석열 정권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유도하기 위하여’라든지 ‘비상계엄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넣어 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뒤에 있는 것으로 의미는 전달되는데 말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끊긴 느낌이에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앞에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아가 전자정보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철회한다고 하셨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2항 관련해서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 즉시 반환한다’ 이 조항도 군사기밀 보호법에 보면, 지금 우리 당의 특검법에 비밀엄수 조항을 어기는 경우에 징역 3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은 5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처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삭제를 해 주신다고 그래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23조(별칙)의 ‘3년 이하의 징역’ 이 조항을 소급해서 보면 8조 1항에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군사상 기밀 누설하는 경우에.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이 부분을 넣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0조의 군사상 비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별칙 조항 1항에 아니면 별도 항으로 특히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누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처벌은 이대로 놔둬도 다 포섭이 되는데요.

○**서영교 위원** 이대로 놔둬도 다 포섭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더 가중 처벌하는.

○**이성윤 위원**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가중 처벌을 왜 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군사기밀 보호법에 있거든요. 5년 이하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을 반영하는 의미입니다. 놔둬도 되고요.

○**서영교 위원** 그냥 가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뭐 그렇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어차피 주의 의무가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서요 누설과는 좀 별개이기는 한데 정말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삭

제하셔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오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그런 우려를 담는 심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 사건 특검이 발동되는 경우에 군사법원 관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특검이 향후 기소할 사건에 대한 관할 이런 등등 또는 공소유지 주체와 관련해서 서로 모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생각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계속 중인 법원 심리사건의 공판, 공소유지 검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정리를 좀 해 봐 줄 수 있겠어요?

지금 18조를 보면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고 이첩 요구 조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첩 요구 조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맞지요?

○**전문위원 김성완** 예.

○**소위원장 박범계** 없어요. 그래서 이첩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공소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공소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검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40명이랑 어떻게 조화가 돼요? 파견검사 30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은 그 30명 조항의 예외를 둔다는 얘기예요?

○**장동혁 위원** 쫓아내고 다시 받아야지.

○**유상범 위원** 그러면 숫자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장동혁 위원** 쫓아내야지.

○**유상범 위원** 안 맞잖아.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이 특검법에 검사 등의 파견 조항들이 있지 않나요?

○**박균택 위원** 예, 30명 파견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30명 파견만 되어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몇 조지요?

○**박균택 위원** 6조 4항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냥 놔둬도 되는데 괜히 말했네.

○**소위원장 박범계** 6조 4항이네.

○**서영교 위원** 그 상황에 맞춰서 숫자를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은 별개로 두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시거나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것은 수사를 위한 30명이니까, 공소유지를 위한 거니까 파견검사에서 30명 이내와는 별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균택 위원** 6조 4항과 별개로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벌써 그게 이 규정과 모순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박균택 위원** 어떤 것과 모순이 됩니까?

○**유상범 위원** 파견검사 수는 수사만을 위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소유지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소유지 검사를 10명 더 넣는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던 기존 사건과 달리 수사 따로 공판 따로 이중으로 움직일 때 중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하십시오.

○**박희승 위원** 하여튼 취지는 알겠는데, 앞에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안 해요? 하잖아요.

○**박균택 위원** 하기는 하는데……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지.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30명의 검사들이 수사도 하고 이어지는 공판을 담당할 때와 지금처럼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공판이 기존에 남아 기소해 놓은 사건을 한꺼번에 공소유지할 때 생기는 중첩적인 부분의 부담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30명 이내 파견, 6조 4항에 대한 예외로 ‘이첩 요구 사건에 대한 공판 관여 검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박균택 위원** 예.

○**장동혁 위원** 그런데 사건 하나 이첩받고 10명 파견받아서 그 사람들 수사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유상범 위원** 들으셨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정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박균택 위원**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범계** 얘기를 하세요. 장동혁 위원, 얘기를 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됐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굳이 말 안 하면 어디 나가서 비판하기 더 좋아요. 훨씬 좋지만 그래도 만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검사 수 줄였다 이런 얘기가 다 완전히 몰각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수사권을 남용할까 봐 이런 숫자 제한을 두는 것일 텐데 공소유지를 남용한다는 표현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걱정 안 해요. 걱정은 안 하는데……

○**박균택 위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내가 걱정은 안 하는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비판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굳이 줄이는 얘기를 내가 뭐 하려 하느냐 싶지만 그래도 법을 만드시니까 좀 신경을 써보시라고 지금 옆에서 조언드리는 거예요.

○**박희승 위원** 그러면 공판검사 요청은 하지 말고 그냥 이첩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지요. 그러면 이첩받은 사건은 원래 수사검사가 공판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18조 1항에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박희승 위원** 기준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아마 군사법원 안을 가져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 18조 안에다가 넣어서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18조 3항에다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요.

6조 권한에다가 넣는 게 좋겠네요. 6조에 보면 1항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공소유지,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그다음에 3항에……

○**유상범 위원** 3항이 아니라 3호.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3항. 3항인데……

○**서영교 위원** 3항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요, 3항은 자료제출 요구고요.

그냥 1항 1호에다가 ‘각 호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그리고 기존 공소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박균택 위원** 3항은 주로 수사 위주의 협조 요청 아닙니까? 이첩 요청이니까 차라리 3항 다음에 4항을 추가를 해 가지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이첩……

○**서영교 위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박균택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서영교 위원** 3항 다음에 4항으로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지. 넣으려면 1항에도 넣어야지.

○**소위원장 박범계** 1항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지?

○**유상범 위원** 예.

○**박균택 위원** 1항에 공소유지라는 추상적인 권한은 이미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잠깐만.

○**유상범 위원** 이첩 요구 권한이니까 1항으로 들어가야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1항 1호에, 지금 수사지요. 그렇지요?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수사한 결과로서의 공소여부 결정 그리고 그 사건의 공소유지 및 더 나아가 그리고 기존 공소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 이렇게 넣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맞지요?

○**서영교 위원** 깔끔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첩 요구가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직무범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그냥 4항으로 그 얘기를……

○**소위원장 박범계** 이첩 요구는 직무범위인 것 같아요.

○**박균택 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18조의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것도 수미가 쌍관한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반대는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주도로 만든 법안에서 혹시 남한테 비웃음 사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면, 그러면 조항에다 추가해야 되는 게, 이첩요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 기관에게 응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어야지.

○소위원장 박범계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유상범 위원 그게 그렇지도 않지. 그게 그렇게 되나요? 없는 규정인데, 공판사건을 가져온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서영교 위원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소위원장 박범계 그 정도로 하고.

○서영교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맡겨 주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범계 위원님을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박희승 위원 그러면 호를 하나 더 만들든지요. 3호로 하나 만들든지. 수석전문위원이……

○유상범 위원 정리되면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렇게 합시다.

직무범위 권한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다 ‘따라야 된다’를 넣는 것? 어때요?

○서영교 위원 ‘이 경우 해당 관계 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3항에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있네. 오케이.

○서영교 위원 그런 것처럼 거기도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네요. 맞네요.

그러면 아까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와 기존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를 넣고요.

○이성윤 위원 이첩이라는 게 법원 간의 이첩을 말씀하는 건가요?

○박균택 위원 아니, 검사와 검사 간에. 일반검사와 특별검사, 군검사와 특별검사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아니.

○이성윤 위원 사건 이첩이라는 게 법원에서 이송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지요.

○박균택 위원 아니, 그것은 법원끼리……

○소위원장 박범계 법원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공소유지를 검사가 하고 있잖아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혹은 군검찰청 검사가 하는 것, 그 공소사건을 이첩받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특검이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사건은 그대로 있는 거고.

법원행정처 차장님, 어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원에다가 기소가 되게 되면 이송이라는 측면이 생길 텐데요. 같은 중앙지법에다가 기소가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의 병합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별다른, 이첩이라는 용어는 저희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신 취지가 군사법원 사건의 이송.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군사법원 사건의 이송입니다.

○**박균택 위원** 군사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송 그다음에 검사와 특별검사의 교체는 이첩,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개념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 18조에 이미 군사법원 사건은 당연히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해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원 간에 그것은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이 계속 사무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공소유지를 일반 검찰이 하는 것을, 그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이 이첩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첩이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예, 이 법안 안에도 이첩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1호에다가 이첩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6조 3항에 ‘압수, 수색,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요청할 수 있다’와 ‘위 1항 1호의 이첩 요구에 관계’……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소유지가 직무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4항에다가 ‘특별검사는 검사·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라야 한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 경우 관계 기관은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균택 위원** 이 얘기를 하나 4항에다 넣어 버리면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할까요?

○**서영교 위원** 1호에 넣자고 하시더니.

○**소위원장 박범계** 어떤 것이 바이블은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봐 주세요.

재판부에 사건이 다 가 있는 거거든. 그것은 지금 법원에다가 이첩을 명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아니지. 법원에……

○**소위원장 박범계** 공소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하는 공소유지 권한을 이첩 받는 거니까,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유상범 위원** 그렇게?

○**박균택 위원** 공소유지 업무의 이첩입니다.

○**박희승 위원** 법원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할권이 중앙법원의 전속 관할로 되어 있어서.

○**소위원장 박범계** 예, 법원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재판부는 안 바뀌나?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참고로 군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다가요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재판부는 안 바뀌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군검사에서 일반검사로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항에다 넣자는 얘기지요?

○**박균택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 뒤로는 하나씩 밀려 나가고.

○**박균택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4항에……

○**박균택 위원** 특별검사는 검사·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장 박범계**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된다.

○**박균택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영교 위원** 좋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왜 거기에 이렇게 빠져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다 통수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수사·재판 기간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의미가 없고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준수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뤘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상범 위원** 표결하실 거니까 표결 전 마무리 빨언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대상과 관련돼서는 아주 혼격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영교 위원** 반대를 위한……

○**유상범 위원** 미안합니다만 서영교 위원님, 이제 60이 넘으셨지요?

○**서영교 위원** 아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면 안 되지요. 세상이……

○**소위원장 박범계** 그만해요, 그만.

○**유상범 위원** 아니,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꼭 말을 해요?

○**서영교 위원** 아니, 특검 추천 문제를 얘기하더니,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도?

○**유상범 위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거에 관해서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 여지껏 내내 토론했지 무슨 토론을 안 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주진우 위원 일방적으로 다 했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수사대상과 관련돼서 분명히 6호 이후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과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격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핵심 주동자라고 할 수 있고 핵심 관계자들은 전부 구속이 됐고 대부분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특검이 발족한다면 결국 특검은, 위원장께서 그 부분의 우려를 통해서 사건까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든 걸로 봐서, 결국은 공소유지를 주로 하는 것이 내란죄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7호부터 8·9·10·11호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만, 우리 당 관계자 수십 명, 의원들 수십 명이 관여되어 있는 66건의 고발 사건이 있고요. 그 외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사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수사대상의 내용이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무한정 수사를 할 수 있게 확대되어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성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위원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조와 관련돼서는 내란죄와 관련돼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112조를 제외하고 국정원법 등을 다 제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책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책임자는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내란과 관련돼서 과연 책임자 누가 거부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인데 특정한 법안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이런 식으로 예외로 한다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 특검법이 발족되거나 할 때마다 결국 그런 소위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의 수정안을 준비한다고 언론에 밝혔고 그와 관련돼서는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기다리지 않고 하루 만에 법안 발의한 것을 오늘 다 해서 표결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추가 논의를 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표결을 하는 데는 저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소위원장으로 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정리 발언겸.

여당 위원님들, 특히 유상범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무력이 현재까지 체포 집행에 방해 요소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관저 앞에 많은 군중들이 대통령이 이 나라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 나라 체제의 본질이다라는 정말 어마 무시한 내용, 즉 내란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것이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으며, 하물며 더 나

아가서 백골단이라는 우리 역사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명칭을 부활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청년들을 국회 소통관으로 안내해서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법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또는 긴급성, 불가피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특검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면, 전혀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특검 스스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하는 것 역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얘기를 해 주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와 관련해서도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소위 압수수색을 이유로 해서 이 사건, 내란의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성도 있지 않은 국가기밀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가져다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누설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요.

또 하나는 향후에, 과거의 특검 사례들은 다 무혐의 내지는 수사 미진 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에 특검이 가져와서 수사해서 기소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쟁해서 수사를 한 결과 결국은 윤석열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피의자는 다 수사해서 기소가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소 제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됐든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 또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될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상호 모순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성,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경우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직무를 특검이 가져다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의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는 이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추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조에 이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필요 없는 게 그 뒤에 있네요, 이 항에. 그걸로 포섭이 다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성완** 지금 3항, 4항에 관련해서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설한 4항을 추가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하게 돼 있고요. 그 뒤에 후단 부분에 징계의결권까지도 포섭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오히려 3항에 있는 내용을 빼야겠네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위원 김성완** 아니아니요, 3항은 빼야 되는데 이것은 굳이 안 빼도,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서……

○**박균택 위원** 아니, 체계 정확히 따지면 3항에 있는 이 말조차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성완** 원래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균택 위원** 그렇네요.

○**이성윤 위원** 그러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중에 1호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검사가 수사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면 ‘이 법 시행 전에 기소한 사건을 포함한다’를 넣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성완**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지금 회의가 끝나 가지고 이것은 의안 정리 차원에서……

○**이성윤 위원** 아니, 어차피 수정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성완** 아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하고 중복되니까 위원장님의 의안 정리 차원에서 여기에 포섭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박균택 위원** 전체위 때 주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거라서 의견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희승 위원** 회의록이 올라가니까……

○**전문위원 김성완** 이것은 제가 의안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냥……

○**박희승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잘해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법무부차관님, 잠시 쉬는 시간 이용해서 질문 하나, 공식적인 질문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검찰, 김용현만 빼고 ‘제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저도 그냥 신문 헤드라인만 봐 가지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이 내용마저도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할 상황이고 고소·고발이 경찰에도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결정을 서둘러 하게 된다면 윤석열 관계자들 봐주려고 한다는 오해만 받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잘했던 수사마저도 뭔가 또 불신을 받게 되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폭로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균택 위원** 뒤에 검찰국장님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지금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찰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 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3년씩 수사하는 사람도 있고 나올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결론이 나왔어도 명퇴조차 못 하게 1년, 2년씩 쥐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 것을 봤는데 굳이 이 국무위원들을 빨리 무혐의 결정을 못 해 줘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는가 싶습니다.

기존에 그래도 김용현 사건 때 열심히 해서 얻었던 점수까지 잃고 불신만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하셔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2항 이하 추가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균택 박범계 박희승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